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72

발의연월일: 2024. 12. 6.

발 의 자: 박주민・이병진・한창민

이기헌 · 염태영 · 윤종군

김영호 • 민병덕 • 김남근

서영석 · 안태준 · 이재강

조 국 의원(13인)

제안이유

징벌적 배상은 피해자의 권리·법익 침해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특별히 더 부과하는 또다른 손해배상을 의미함. 최근 소비자와 일반시민에 대해 영리형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음.

실제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전보배 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 상의 2배로 함(안 제4조).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안 제4조에 의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심급별 2천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7조).
- 라.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동일한 법원 혹은 각기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도모함(안 제8조).
- 마.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 피해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징벌적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제시함(안 제9조).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여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보배상"이란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 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 2. "징벌적 배상"이란 전보배상 외에 제4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을 말한다.
 - 3. "징벌적 배상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에 이 법에 따른 징벌적 배 상의 청구가 포함된 소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정벌적 배상 및 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징벌적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 ③ 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제4조(징벌적 배상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전보배상 외에 전보배상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할 책임이 있다.
- 제5조(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가중)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타 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에게 제4조에 의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제7조(인지액의 특례)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심급별 인지액의 상한은 각 2천만원으로 한다.
- 제8조(병합심리 등) ①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동일한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 리(倂合審理)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정벌적 배상청구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 법원이나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

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징벌적 배상액 산정)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규모
 - 3.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불법행위의 기간 및 피해 발생 빈도
 - 5. 불법행위 적발 시 가해자의 태도나 행위
 - 6. 가해자의 재산 상태 및 규모
 - 7.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받을 형사처벌 또는 그 밖의 제재처분의 정도
 - 8.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받은 형사처벌, 민사 확정재판 또는 그 밖의 제재처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한다.